

청소년안전사고 판례를 통해 본 청소년지도자의 법적 책임*

김문수** · 지영섭***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부여되는 청소년지도자의 사고 책임 전가와 인권침해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적절한 안전의식의 지식을 제공해주고자 필요한 법적 판단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판례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지도자에게 부여되는 안전사고의 책임 범위와 그 판단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청소년지도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판단기준은 안전사고의 결과와 청소년지도자의 부주의 및 과실과의 인과관계,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 안전배려의무, 대리감독자로서의 의무 등이 추출되었다. 그 외 활동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본형 활동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활동별로 요구되는 전문성, 안전수칙, 안전배려의무가 적용되었고, 이동형 활동은 이동수단별 상시적인 주의의무와 안전수칙 및 구호 및 구조 물품에 대한 사용법 교육 등의 숙지 및 공유가 되어야 하며, 숙박형 활동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시간, 취침시간 등 활동 전반에 대한 주의의무가 지속되었고 합리적인 생활수칙과 기준에 따른 생활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안전사고의 법적 쟁송에서 요구되는 청소년지도자의 법적 책임의 주요 판단기준, 지도자의 관리·감독 책임, 전문적인 교육능력 및 인식개선 사항을 지적함과 동시에 청소년활동별 세부적인 안전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기회 확산, 그리고 부당한 사고 책임 전가와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적 보호 장치 및 관련 기구 설치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소년안전사고, 청소년안전, 청소년지도자, 판례분석, 법적책임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한 것임.

** 제)경기도청소년수련원 객직원팀장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zoejvl@gmail.com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건전한 신체와 인성을 만들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와 가치를 형성해간다. 그 가운데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활동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 및 지원하며 청소년복지와 보호 관련 직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6).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지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도 자연스레 많아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그와 동시에 청소년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교 내 안전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16,077건에서 2019년 138,78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외 활동 중 안전사고도 연간 5천여 건 수준으로 나타났다(학교안전공제회, 2020). 씨랜드 화재 사건(1999.06)부터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2013.07), 세월호 침몰사고(2014.04)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안전사고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하지만 많은 경우 청소년안전사고의 원인을 안전의식 부재 및 안전교육 미비로만 치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 개인 신체적·정신적 결함, 활동별 지도자의 전문성, 시설별 관리 및 안전사고 지침 문제, 교육환경(기상·날씨, 사고 가능성 있는 환경 등), 국가 및 정책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원인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법률적 차원에서 청소년안전사고 발생 시 나타나는 다양한 인과관계의 원인을 살펴보고 청소년 현장의 주 교육책임자인 청소년지도자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법적 분쟁의 사례들을 모아 청소년지도자들에게 부여되는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 요소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교육현장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정책 연구와 더불어 학교안전공제회 중심의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2007년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도덕적 책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점차 명료화되어 제공하고 있다.

그에 비해 청소년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이나 책임분쟁 해결을 위한 지침, 규정 등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체 기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과 관행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청소년안전사고 발생 시 청소년지도자에게 부여되는 법률적 책임 범위와 판단기준을 추출하여 청소년지도자 법적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활동유형별 다루어지는 청소년지도자의 책임소재 요소들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 1) 기본형 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청소년지도자의 책임은 어떠한가?
- 2) 이동형 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청소년지도자의 책임은 어떠한가?
- 3) 숙박형 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청소년지도자의 책임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안전사고의 개념

일반적으로 안전(Safety)의 개념은 위험사고 및 위험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행동 변화에 의해 생긴 상황이나 상태라고 정의하며(Florio, 1962), 사고(Accident)의 개념은 접두사 'Ac'와 떨어진다는 뜻의 'Cido'를 어원으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손실을 의미한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3). 두 개념을 종합하여 안전사고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고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서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안전교육 미비 등 재산 또는 사람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라고 정의되며(한정훈, 2007), 그 원인을 물적, 인적, 환경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Haddon, 1970). 이러한 안전사고의 개념은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하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을 종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부에서 정의한 학교안전사고의 개념을 살펴보면 학교 사고 또는 학생사고 등의 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서 학생이 당한 사고 이외의 피해 당사자에 따라 학부모, 교원, 행정직원, 지역주민이 당한 사고, 학교 시설물 파손, 화재와 붕괴사고 등이 포함되어 학교를 둘러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라 정의하고 있다(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임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 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협의적 정의에서 野村好弘(1973)은 학교를 둘러싸고 피해 입은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사고 또는 학교에서 생긴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사고라고 말하며, 박영석(2002)은 학교의 영역 안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불가항력적, 의식적, 자연발생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준 일체의 행위를 총칭한다고 정의하였다. 광의적 정의에서 勞凱聲(2004)는 학생이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인신 상해사고라고 보았으며, 학교시설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이 발생하는 모든 장소(기숙사, 교육장소, 생활시설, 교학시설 등)를 포함한다고 보았고, 김현기(2014)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여 쉬는 시간, 운동장 개방에 따른 저녁 시간대, 학생 부주의까지 교육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정의하였다.

한편, 청소년안전사고의 개념은 아직 법률적·학술적으로 정립된 상태가 아니지만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활동 안전은 활동 전 과정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 유지, 사고 예방, 대응체제 구축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였으며(여성가족부, 2015), 청소년활동은 건강증진, 과학정보 활동, 교류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자원봉사활동, 진로 활동 등을 포함한다고 보았다(문성호 외, 2016).

종합해보았을 때,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라는 환경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이라는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청소년안전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보고자 한다.

청소년안전사고는 ‘학교 및 청소년활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전 과정에서 부주의, 안전교육 미흡,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청소년, 청소년지도사 또는 교육담당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 신체적 피해 및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포함한 모든 사고’라고 정의하였다.

2. 청소년안전사고 관련 법률

1) 국내 청소년안전사고 관련 법률

청소년안전사고에 관련된 법률은 크게 헌법, 민법, 국가배상법, 청소년 관계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헌법에서는 기본법을 전제하고 있으며 전제조건으로서는 자신의 신체, 생명, 건강 등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기 결정권의 행사를 실현해야 하고 국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 재해 예방, 국민 보호의 과제 등을 명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4조 제6항, 제36조 3항). 이러한 관점은 크게 소극적 관점과 적극적 관점에서 안전 보호의 의무를 살펴볼 수 있다(김대환, 2014). 소극적 관점에서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객관적 요청, 방어할 권리, 생명 및 신체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권리 등을 갖는다. 적극적 관점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국민의 안전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있으리라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시, 둘째는 국민의 안전이 다른 이의 행위를 통해 위협이 예측되거나 실제 받고 있음에도 국가가 이를 방지하는 행위를 게을리할 시에 국민의 안전이 희생된다고 본다(전광석, 2015). 이러한 내용은 헌법 제29조에 명시되어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혹은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배상 청구의 권리로서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장영수, 2012).

다음으로,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제750조, 책임무능력의 감독자 책임 제755조, 사용자의 책임 제756조, 공작물 등 점유자 혹은 소유자의 책임 제785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조에 의거 특수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750~제752조는 고의나 과실 여부에 의해 손해 발생 또는 위법행위에 대해 요구하며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은 제753조, 제754조에 명시되어있다. 그 외 일반불법행위 요건으로는 성립조

건에 따라 크게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 가해자의 책임능력,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김준호, 2013).

셋째,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수행업무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1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동조 제2항에서도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관계법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이 있다. 우선, 청소년기본법을 살펴보면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에 대한 지원 내용을 청소년복지법, 청소년활동법, 청소년보호법으로 따로 정하였다. 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활동법 제9조의2에서는 숙박 또는 비숙박형의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반드시 교육의 절차와 방법의 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의3에서는 참여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사고에 대한 치료의 의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18조의2 안전교육, 제18조의4 수련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25조 보험 가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종사자 및 사고유형에 따라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2) 국외 청소년안전사고 관련 법률

① 중국

중국은 크게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과 민법통칙에서 안전사고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송재우, 2017에서 재인용). 먼저,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은 과실책임 원칙을 크게 다루고 있다. 이는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의 배상책임,

공작물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중화인민공화국 침권 책임법 제6조) 우리나라의 민법 제750조(책임무능력의 감독자 책임), 제755조(사용자의 책임), 제756조(공작물 등 점유자 혹은 소유자의 책임)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동법 제6조(과실추정책임), 제7조(무과실책임), 제24조(공평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들은 오늘날 새롭게 나타나는 불법행위 문제의 해결과 과실책임 원칙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다 상세히 하고 있다.

둘째, 중국에서 청소년 관계법으로는 민법통칙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에 의한 미성년자 보호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미성년자보호법상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후견인(감호인)이 민사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다(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133조 제1항 제1문). 또한, 청소년안전사고에 있어 본인의 실수나 과오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사고에서는 응당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학생상해사고처리방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唐仪莹, 2012). 그 외에도 교육법, 교사법, 의무교육법, 학교체육공작 조례 등의 관계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② 일본

일본은 국가배상법을 통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上井長久, 197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안전회법, 학교보건법 등을 제정 및 개정하면서 교과교육뿐만 아니라 체육, 보건, 특별활동, 실습활동 등 다양한 활동의 안전지도 강화 및 법률적 책임 판단기준을 규정하였다. 대개 청소년안전사고는 학생피해에 따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공제 급부가 가능하며, 일본안전회를 중심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법적 쟁송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에 있어서 학생의 고의적 범죄행위나 고의 부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중대한 과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교육책임자가 책임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각각의 활동별 안전지도, 학습지도 요령 및 지침, 각종 사고방지 지도서 등이 다양하게 개발·보급되는 만큼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분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박재향, 2002에서 재인용).

③ 미국

미국의 경우, 이전에는 전통적인 관습법상 정부 면책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적 책임만을 인정했었다. 교육 활동에 있어서 시설, 설비, 감독, 관리가 충분했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과실은 전적으로 교육자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오면서 정부 면책의 원칙이 점차 피져가기 시작했고, 1946년 불법행위청구권법(The Federal Tort claims Act)이 제정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교육자의 과실책임에 대한 구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 정의한다(Alexander & Alexander, 2011). 일반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와 과실 여부, 가해자의 책임능력, 가해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손해 발생에서의 가해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며 특수불법행위는 감독자 책임, 사용자 배상책임,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한승희, 1999에서 재인용). 이는 우리나라의 민법과 유사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법적 과실에 대한 주요 판단기준은 주마다 관련 법이 매우 상이하지만 공통적인 법적 판단기준은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 안전사고에 있어 지도자와의 인과관계, 안전사고의 주의의무, 관리·감독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최윤진, 1998).

종합해보면, 헌법을 통해 청소년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근거와 전제를 인식할 수 있고, 민법을 통해 교육책임자에게 부여되는 가장 기초적인 책임과 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문화권 법률을 통해서도 비슷한 내용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청소년 현장의 교육책임자인 청소년지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기준으로 안전사고판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청소년지도자 개념과 안전사고에서의 역할, 법적 판단기준

1) 청소년지도자 개념과 안전사고에서의 역할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진흥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직접 제공하고 돕는 사람이다(정건희, 2020). 좁게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청소년시설 및 단체 관련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청소년기본법 제3조 7항), 넓게는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이를 포함한다. 이는 청소년 대상 관련 업무를 종사하는 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지방공무원, 보호관찰관, 아동복지사, 스포츠 지도사 등의 직업군을 모두 포함할 수 있고, 대상별, 담당업무(활동유형)별, 성능별, 참여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6).

이러한 청소년지도자들은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하는 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민법 제755조).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책임무능력자(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장애청소년, 요보호청소년 등)가 타인에게 가한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5조 제2항), 직무상의 고의나 실수가 인정될 경우, 사고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면 불법행위로 그 책임을 질 수 있다.

2) 안전사고에 대한 청소년지도자의 법적 판단기준

안전사고에서 청소년지도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 주요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는 미국에서 청소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청소년지도자, 교육당사자의 개인적 책임을 인정하는데 주요하게 고려되는 규정들이다(최윤진, 1998에서 재인용).

첫째, 지도자가 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김영희(2006)와 이해란(2010)의 연구에서는 안전사고에 있어 사고 원인과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의 소재가 예측할 수 있었느냐의 판단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이 가려진다고 보았다. 실제 판례상에서도 사고예측 가능성에 따라 교육자의 과실 여부가 인정된다면 교육자는 사용자 민사상 배상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폭력사고는 교육자에게 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 본인 자초사고는 대리감독자로서의 민사상 책임, 시설 및 관리상의 문제에 의한 사고는 그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안전사고와 지도자의 행위 간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한다. 박재향(2002)의 연구에서는 인과관계의 근거가 되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조항을 기준으로 책임소재 규명 근거를 판단하였고, 정영신(2003)과 김영희(2006)의 연구에서도 통

상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자의 보호와 감독의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와 사고와의 관계에 대해 주요한 판결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지도자의 주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기호(2005)와 이설영(2008)의 연구에서는 교육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서 체벌과 같은 사례들은 사회상규상 객관적 타당성 유무이며 체벌이 아닌 사례는 주의의무의 이행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넷째, 주변 환경에 따라 어떻게 관리·감독의 적용 범위가 성립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휴식시간, 점심시간, 청소시간, 이동시간, 숙박시간 등 교육 활동 외 시간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책임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교육자들이 사고가 예측 가능한 환경(실험실, 실습실, 야영장소 등)에서 관리·감독의 적용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을지 따져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개인의 나이, 성별, 심리, 성숙 정도 및 건강 상태와 안전사고 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나이나 성숙 정도가 매우 어리거나 장애 여부, 신체적 결함, 정신적 질병 등이 있는 요보호청소년의 경우,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III. 연구방법

청소년안전사고에 대한 판례분석은 청소년안전사고 발생 시 청소년지도자의 법적 판단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청소년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나 근거 등에 대한 관련 법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하위 법령에 의거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으며(임재석, 2012) 그 판례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학교 및 청소년안전사고에 대한 주요 가이드라인(최윤진, 1998)과 교원 및 교원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실정법에 대한 법률 내용을 연구목적에 맞게 적용하여 판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자료수집

판례 수집은 대법원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재판정보, 케이스노트(<https://www.casenote.kr>) 등에서 ‘안전’, ‘사고’, ‘청소년활동’, ‘수련활동’ 등으로 키워드를 검색하여 청소년안전사고 관련 판례를 수집하였다. 1976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학교(임종수, 2014; 학교안전사고공제회, 2010) 및 청소년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공개된 판례를 수집한 결과 7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청소년안전사고로 사법적 해석이 유사한 판례 및 세부 활동유형별로 구분 가능한 판례 총 21건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분석절차

판례분석은 청소년안전사고를 크게 기본형, 이동형, 숙박형(청소년활동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본형은 1일 1시간 이상 각 회기로 숙박 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이동형은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 장소로 이동하여 이루어지는 활동, 숙박형은 일정 기간 숙박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라 정의한다(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수집된 판례들은 활동유형에 따라 세부내용을 분류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판례에서 법적 책임을 판단한 요인을 정리하였고 분석된 법적 판단기준을 미국의 학교 및 청소년안전사고에 대한 주요 가이드라인과 교원 및 교원당사자에게 활용되는 실정법을 종합하여 청소년지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책임소재의 내용 및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리하여 첫째,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판례를 활동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례의 사건 개요, 판결 요지를 제시하고 법적 판단 및 쟁점이 되었던 기준과 책임 범위를 규정하였다. 둘째, 청소년 현장에서 요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책임소재의 법적 판단기준을 활동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청소년안전사고의 유형과 판례 수

활동유형	세부내용	판례수
기본형	실내활동	3
	해양·수상활동	2
	야영·캠핑활동	2
	신체·체육활동	2
	휴식시간	5
이동형	차량이동	1
	기차이동	1
	선박이동	1
숙박형	숙박형 활동	4
합계		21

IV. 안전사고에 대한 청소년지도자의 법적 판단기준

1. 기본형 활동 중 일어난 청소년안전사고에 대한 판례분석

표 2

기본형 활동 중 일어난 청소년안전사고 판례 사실관계

번호	사건번호	청구인	주요내용	판결
1	대법원 2016다208389	부산시 학교 안전공제회	자율학습 중 화장실을 갔다가 쓰러져 사망한 사건	무죄
2	서울중앙지법 98가합58318	서울특별시 외 2명	실험실에서 열기구실험 중 발생한 화재로 상해를 입은 사건	유죄
3	춘천지방법원 2006가합322	피고인	자동차 분해 실습 중 발생한 상해사고	유죄
4	대전지방법원 2014노177	피고인 외 5명	수상활동 안전조치 의무 미행에 따른 사망사고	유죄

번호	사건번호	청구인	주요내용	판결
5	대법원 2001도6601	피고인 외 1명	수영장 물놀이 중 발생한 익사 사고	무죄
6	대법원 91도1075	피고인	야영장에 설치된 전기점화 장치 무단 사용으로 인한 감전사고	무죄
7	대법원 80다551	학교 법인재단	야영활동 중 활동장 이탈로 인해 발생한 익사사고	유죄
8	청주지방법원 86가합309	충청북도	체육시간에 넓이뛰기 시험을 보던 중 학생이 넘어져서 상해 입은 사건	유죄
9	대법원 96다38070	경상남도	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건	유죄
10	서울중앙지법 99가합111247	서울특별시	강당 대형선풍기를 무리하게 작동시키려다 발생한 상해 사건	유죄
11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24884	피고인 외 1명	영어캠프 참가 중 휴식시간 축구놀이하다 상해를 입은 사건	유죄
12	서울중앙지법 2000나 6253	서울특별시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발생한 상해사고	유죄
13	서울고등법원 2006나16361	서울특별시	중앙계단 사이 손잡이를 미끄럼타고 내려오다 발생한 상해사고	유죄
14	서울중앙지법 2012고단4650	피고인	미화시간 유리창 베란다 청소를 시키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유죄

1) 실내활동

실내활동은 주로 일반강의실, 실험실습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자치활동 및 교육 활동 전반을 일컫는 활동이라고 일컫는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이에 대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판례 1〉 대법원 2016다 208389 판결

[사건개요] 00고등학교 2학년인 A학생은 자율학습시간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뇌전증(간질)으로 인해 쓰러져 사망한 사건

〈판례 1〉은 자율학습시간 중 일어난 판례이다. 일반적으로 교육 활동 중에는 지도자의 관리·감독 아래 있기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경우에는 지도자가 상주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 판례 역시 자율학습시간에 일어난 사고로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하다 일어난 일이다. 사고 당사자는 평상시 뇌전증에 대한 치료기록이 있었고,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는 점에서 요보호청소년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점은 분명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사고의 공제급여 대상으로서 보기엔 어렵다고 보았고 지도자의 공백이 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책임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만, 이 판례를 통해 지도자는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특별 보호·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안전사고의 법적 쟁송에 지도자가 엮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판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합 58318 판결

[사건개요] 00중학교 2학년이었던 A학생은 열기구 실험이 모두 끝난 후 지도교사가 뒷정리를 맡긴 채 떠났을 때, 친구들끼리 감독자 없이 시험을 진행하다 인화성 물질(알코올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은 사건

〈판례 3〉 춘천지방법원 2006가합 322 판결

[사건개요] 00고등학교 자동차학파에 다니던 A학생은 자동차 구동 제어장치 분해 실습 중 베어링 파손으로 갑작스레 튀어나온 베어링 볼에 안구파열상을 입게 된 사건

〈판례 2〉는 강의실 내 실험 활동 중 일어난 판례로 교육자의 관리·감독과 예측 가능한 사고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과학실이나 실험실의 경우 인화성 물질, 유해하고 위험한 물질들이 상당히 많다. 이 판례에서도 발화원인은 알

코울이었으며 그만큼 교육자는 실험 활동 및 실험 활동의 연장 선상에서 뒷정리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충분한 안전지도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시 분명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다.

〈판례 3〉은 실습 활동 중 일어난 안전사고로 실제 많은 청소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사고이다. 이 판례에서는 특히 교육자의 감독과 사고 원인 간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기계 혹은 장비 및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기자재의 경우, 교육에 앞서 실습실 내의 유의사항 및 안전사항 등을 충분히 제공이 필요하지만 본 판례에서의 교육자는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본 판례에서는 판시하였다.

2) 실외활동

실외활동은 청소년 현장에서 주요한 활동이며 매우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추출한 판례의 내용과 연구목적에 고려하여 크게 그 유형을 해양·수상활동, 야영·캠핑활동, 신체·체육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한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1) 해양수상활동

〈판례 4〉 대전지방법원 2014노 177 판결

[사건개요] 00해병대캠프에서 00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련 활동 중 교관에게 안전장비(구명조끼)를 벗고 바다에 입수하라는 지시를 받아 깊은 갯골에 빠진 뒤 파도에 휩쓸려 5명의 학생들이 실종 및 사망한 사건

〈판례 5〉 대법원 2001도 6601 판결

[사건개요] 00초등학교 6학년 A학생은 설악산 수학여행 중 00수영장에 방문하여 과도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물에 빠져, 안전요원이 발견하여 응급구조를 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하게 된 사건

〈판례 4〉는 지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분명함에 따라 과실책임이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양·수상활동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교육자들에

게 요구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전문성과 자격 기준, 보조지도자의 업무 역할 등에 취약성이 드러났다. 또한, 사고의 원인과 교육자의 판단에서 기상의 상황, 사전교육 장소의 안전성 점검, 구호 물품 및 안전장비에 대한 점검 미흡 등이 사고에 대한 사전예측이 가능하고 안전배려의무와 관리·감독의무가 충분히 필요함에도 이를 모두 게을리했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다.

〈판례 5〉 역시 수상활동 중 일어난 익사 사고지만, 〈판례 4〉와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고 지역이 인위적으로 파도를 일으키는 장소이기에 시설 및 안전요원들은 기본적인 안전장비, 구명조끼 착용 등 충분한 사전공지와 주의사항 안내 등에 충실했던 반면, 사고 당사자는 자신의 안전에 대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나이였으며 사고를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에 익사 사고의 원인과 지도자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야영·캠핑활동

〈판례 6〉 대법원 91도 1075 판결

[사건개요] 야영장 캠프파이어 활동 중 연수부 지도교사가 시설책임자의 허락 없이 야영장에 설치된 전기점화장치 사용을 승낙했다가 감전된 사고

〈판례 7〉 대법원 80다 511 판결

[사건개요] 보이 스카우트 하계 야영대회에서 갑작스레 변경된 야영장소(하천폭포 부근)에서 야영을 하고 하산하던 중 무리를 이탈한 A학생이 폭포에서 익사한 사고

〈판례 6〉은 캠프파이어 활동 중 무분별한 전기점화장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감전 사고이다. 야영·캠핑활동의 경우, 야영 시 사고위험이 있는 기구나 시설사용에 대한 철저한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특히 화기 물질, 전기사용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 본 판례에서도 주변 환경, 전기점화장치의 관리상태, 시설물 관리 등이 고려되었고 충분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시설책임자에게는 상황상 형사상 과실까진 물 수 없고 당시 상급자의 허락 없이 점화장치시설 사

용을 승낙한 담당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판례 7〉에서는 사고 당사자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과실이 인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하천 폭포 부근에서 야영캠프를 실시하던 야영대회에서 한 학생이 다른 대원들을 이탈하면서 익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은 지도자가 충분히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사전현장답사를 통해 야영 장소를 변경하거나 안전하게 지정된 야영장에서 훈련할 필요가 있었고, 교육자 역시 상시 인원, 건강 상태, 안전수칙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에서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전배려의무의 불이행으로 야영활동 담당지도자가 충분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3) 신체·체육활동

〈판례 8〉 청주지방법원 86가합 309 판결

[사건개요] 00고등학교 체육 시간, 날씨(당시, 오전에 비가 내렸고, 쌀쌀했음)가 좋지 않아 자습하던 중 갑작스레 시험을 본다고 하여 운동장에 나왔고, 각자 간단히 준비운동을 한 채 체육교사 감독 아래 3단 높이뛰기 시험 봄. 그 와중에 A학생이 높이뛰기를 하다 다쳐 허부가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

〈판례 9〉 대법원 96다 38070 판결

[사건개요] 00중학교에서 체육시간 A학생은 체력검사(내신평가)를 만점받았으나 담당교사가 만점을 받지 못한 다른 학생들을 격려차 함께 1,000m 오래 달리기를 시킴. 같이 달리던 와중에 갑작스레 쓰러져 후송하다 사망한 사건.

〈판례 8〉, 〈판례 9〉는 지도자의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이다. 먼저, 〈판례 8〉은 청소년안전사고와 지도자 책임의 인과관계에서 충분한 시설점검, 시험장 관리 소홀,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당시 기상 상황과 교육 장소에 대한 점검(모래, 바닥 상태 등), 사전교육(시험 종목에 대한 정확한 설명, 시연, 연습기회 등)을 게을리했다는 점에서 지도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판례 9〉 역시 당시 기상 상황이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임을 인지함에도 교육 활동 이후에도 무리하게 달리기 활동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학생의 건강 상태와 교육환경, 안전배려의무(충분한 준비운동 등)를 게을리했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됨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3) 휴식시간

〈판례 10〉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 111247 판결

[사건개요] 00교육원에서 00고등학교 A학생은 간부수련회를 하던 중 수업이 끝난 강당에서 인솔교사 없이 휴식 취하다 대형선풍기를 다른 학생들이 무리하게 조작하려다 작동하는 순간 튕겨져 나온 선풍기 날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

〈판례 11〉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 24884 판결

[사건개요] 00영어캠프에 참여한 A학생은 합숙 형태의 캠프활동 중 수업 직전 강의실에서 풍선을 갖고 축구를 하다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윗니 3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사건

〈판례 10〉은 휴식시간 공업용 선풍기를 학생들이 무리하게 조작하면서 지도자가 부재한 가운데 휴식을 취하다 사고가 난 판례이다. 지도자는 선풍기의 안전성에 하자가 없도록 보존하고 관리할 필요도 있지만 대리감독자로서 학생들이 선풍기로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 예방 및 교육을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점에서 지도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주의의무 부실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다. 〈판례 11〉 또한 보호자 없이 캠프에 참여하면서 주최 및 지도자들이 이들의 부모를 대신하여 안전한 활동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와 대리감독자의 책임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한 배상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다.

〈판례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나 6253 판결

[사건개요] 00중학교 2학년 A학생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반대향 축구시합을 하다 다른 그룹의 축구시합 학생들과 엮키면서 3학년 B학생이 강하게 찬 축구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

추가적으로 휴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청소년지도자의 의무는 첫째, 사고예측력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판례 12>는 점심시간 축구를 하다 축구공에 맞아 오른쪽 눈이 다친 사고이다. 이 판례에서는 시설장 혹은 지도자들의 주의 조치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좁은 운동장 내에 많은 학생이 축구를 했다는 점에서 운동장 활용계획(공간 내 수용인원 점검)을 세워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점은 충분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즉, 사고예측 및 시설 활용에 대한 사전계획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판례 13> 서울고등법원 2006나 16361 판결

[사건개요] 00초등학교 3학년 A학생은 쉬는 시간 학교 계단을 내려오다 계단 난간에 설치된 손잡이(스테인리스 봉)를 자신의 배에 대고 엎드린 자세로 미끄럼을 타면서 내려오다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판례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 4650 판결

[사건개요] 00고등학교 A학생은 학교 환경미화 심사가 있어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유리창을 청소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학교 내부방침은 유리창 및 난간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킬 것을 금하고 있었음.

둘째, 휴식시간 전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교육 여부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이다. <판례 13>은 학교에서 유리창 청소에 대한 위험으로 이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이를 강요하면서 추락에 대한 사전교육과 예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고, <판례 14> 역시 학생들이 난간을 이용해 미끄럼을 타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돌출물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장치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교육 등이 소홀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다. 그만큼 휴식시간에도 일상적인 혹은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해 사전교육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판례에서도 어떻게, 무엇을 교육했는지에 따라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 이동형 활동 중 일어난 청소년안전사고에 대한 판례분석

표 3

이동형 활동 중 일어난 청소년안전사고 판례 사실관계

번호	사건번호	청구인	주요내용	판결
15	서울중앙지법 95가합24396	서울특별시 외 1명	버스이동 중 무리한 레크리에이션 진행으로 발생한 사망사고	유죄
16	서울중앙지법 2001가합62409	대한민국, 경기도 외 3명	기차이동 중 객차 출입문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	유죄
17	대법원 2015도6809	피고인 외 14명	선박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다수가 사망한 사건	유죄

〈판례 15〉 서울중앙지방법원 95가합 24396

[사건개요] 00초등학교 회장 A학생은 극기훈련 참석차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이동하며 오락(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함. 그때, 버스가 급제동하면서 A학생은 주변에 있던 기둥에 목과 등을 부딪친 후 바닥에 주저앉음. 이후, 몸에 대한 증상을 담임교사에게 호소하며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30여 분간 휴식만 한 채 출발. 얼마 지나지 않아 A학생은 호흡곤란과 마비 증상이 오면서 사망하게 된 사건.

먼저, 차량 이동 시에는 다양한 사고 원인들이 존재한다. 운전수칙위반(과속, 음주, 대열운행 등), 차량결함, 보험 미가입, 차량계약조건과 이행내용의 불일치, 노후 차량 운행, 안전불감증 등이 그 예로 볼 수 있다(충청남도교육청, 2014). 〈판례 15〉는 차내 무리한 레크리에이션 진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특히 이러한 사고들은 이전부터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고유형 중 하나이기도 했으며 이동 중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제지 및 관리 없거나 사고 이후의 신속한 조치의무가 없다면 위험 상황들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관계가 지도자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져 손해배상까지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안전배려의무로써 안전벨트 미착용과 무리한 이동 등의 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토록 사전교육과 상시적인 주의조치를 행할 필요가 있다.

〈판례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 62409 판결

[사건개요] 00중학교 2학년인 A학생은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서울역에서 경주행 수학여행 전용열차를 타고 출발함. 이동 중 열차 객차 출입문에서 실족하여 열차 밖 철로 상으로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사건.

기차 이동 시에도 차량 이동과 유사한 안전배려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 〈판례 16〉은 객실과 객실 사이의 통로에서 학생들이 별다른 통제 없이 돌아다니면서 트랩도어의 잠금장치가 느슨해진 틈에 갑작스레 벌어진 사건이다. 이 판례에서는 주최기관뿐만 아니라 철도청의 관리자들에게도 열차 이용 시 위험 행동과 안전수칙에 관한 주의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특히 인솔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의 위험 행동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판례 17〉 대법원 2015도 6809 판결

[사건개요] 00고등학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출발하기 위해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타고 제주로 출발함. 항해 중 인근 해상에서 급변침하여 선박이 침몰하게 됨.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사건.

〈판례 17〉에서는 선박 이동 시에 발생하는 지도자의 주의의무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사전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이는 수송 주체와의 계약사항 점검, 안전장비 및 대피로 등 관련 시설 및 안전장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선박 관련 부두 내 안전과 승·하차 및 모의 대피 훈련, 구조장비 및 구호 물품 사용법, 대피로 파악 등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비상상황 시 대처요령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기상 상황 및 기상조건, 수용인원에 대한 제한 등 여러 주의의무가 있다. 본 판례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안전사고 발생 시 승객(청소년 포함)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 운송 측에 큰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숙박형 활동 중 일어난 청소년안전사고에 대한 판례분석

표 4

숙박형 활동 중 일어난 청소년안전사고 판례 사실관계

번호	사건번호	청구인	주요내용	판결
18	서울고등법원 2006나62463	피고인 외 2인	수련회 참여 중 친구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건	무죄
19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41012	재단법인 외 피고들	수련활동 중 지도자의 무리한 지도행위로 발생한 상해사고	유죄
20	서울중앙지법 96가합 14871, 42715	재단법인 외 1명	기숙학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유죄
21	대법원 2000도1858	피고인 외 5인	여름캠프활동 중 취침시간 일어난 화재사건	유죄

〈판례 18〉 서울고등법원 2006나 62463 판결

[사건개요] 00수련원에서 중학교 1학년 수련회가 있던 중 친구의 폭행으로 사건으로
눈, 코, 입 등에 상해를 입은 청소년이 사고 발생 이후 발병한 루프스 신염 및 시력상
실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례 18〉은 수련활동 중 폭행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 판례는 지
도자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수련활동 폭행사고와 시력상실 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며 지도자 감독이 부적절했다거나 폭행사고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손
해배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를 통해 수련활동 중 폭행사고의 관
단요소, 사고의 예측 가능성, 청소년 개인 질병과 안전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
적 책임 판단기준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판례 19〉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 41012 판결

[사건개요] 00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A학생은 여름방학 수련활동에 참석함. 수련활동 중 A학생은 방장이었으며, 야간 점호시간 교관(지도자)은 인원 파악을 실시하고자 방장을 부르면서 3차례 왕복 땀띠기를 시킴. 그러던 중 A학생과 다른 학생들이 무리하게 뛰다 엉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판례 20〉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 14871, 42715 판결

[사건개요] 00여자기숙학원은 10대 여성 비행청소년들을 수용하던 시설이 있음. 이 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은 교화의 명목으로 구타, 감금 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기숙사에 방화를 저질러 원생 37명이 사망케 하고 16명이 부상을 입힌 사건

〈판례 19〉은 청소년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사례 중 하나로 야간 점호시간 중 지도자의 과도한 지시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 지도자의 과실이 명백함을 인정한 사건이다. 특히 수련시설에서는 야간 점호 시 투숙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지나친 통제와 지시로 인해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갖지 않고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도자는 숙박시간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합리적 수칙과 기준에 따른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판례 20〉 역시 지도자의 지나친 억압과 감독으로 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 판례에서의 숙박 시설은 시설의 특수성이 분명하긴 했지만 지나치고 강압적인 통제가 오히려 청소년들의 일탈을 부친 결과로 나타났다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판결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기관의 억압적 행위와 낙후된 시설, 충분한 사전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과실이 충분히 인정됨을 판시하였다.

〈판례 21〉 대법원 2000도 1858 판결

[사건개요] 00유치원은 1박2일 여름캠프활동을 00청소년수련의 집에서 진행함.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아이들은 취침하였고, 인솔교사들은 숙소 밖에서 휴식을 취함. 그러던 와중 자기 전 피워놓은 모기향에 주변에 있는 인화된 불이 벽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함. 이로 인해 유치원생 등 2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화상을 입은 사건

〈판례 21〉은 업무상과실치사를 크게 다루고 있다. 주요 법적 책임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교육책임자들은 숙소 밖에 있어 화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참여자들이 책임무능력자임을 감안할 때, 충분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다. 또한, 참여자들은 사리변별력이 미약하고 돌발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없는 연령이며 충분히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주변에 가연성 물질 및 위험요소를 수시로 점검하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결국 숙박형 활동의 경우, 숙박·취침 시에도 지속적인 주의의무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판례분석을 통해 청소년안전사고에서 청소년지도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청소년지도자의 부주의와 과실 여부가 주요 판단요소로 작용하였다.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였듯이 친권자를 대신하여 대리감독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지도자의 과실과 부주의가 사고 원인으로 분명하게 나타났다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이 책임무능력자(만 14세 미만 장애인·요보호청소년 등)일수록 막대한 책임이 부여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청소년 현장에서도 위험성이 예측 가능한 활동들은 충분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위험성 높은 활동을 수상활동, 항공활동, 산악활동, 장거리걷기, 유해성 물질 활용, 레포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선 판례들에서도 공공연하게 학교나 청소년 현

장에서 위험성 높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할 때, 지도자는 사전교육, 사전답사, 기상 상황, 주변 환경, 기자재 점검 등의 주의의무와 사고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주어짐을 보여주었다. 추가적으로 <판례 12>를 통해 시설의 사용계획이 없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도 안전사고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청소년지도자는 위험성 높은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활동에 있어 안전배려의무를 다 하였는가도 중요하다. 여기서 안전배려의무는 사고 발생 이전 청소년 교육 전문가이자 담당자로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였는가, 교육환경·시설은 안전한가, 교육 후 주변 정리 및 사후 조치 등이 과실 및 책임 여부의 큰 판단기준이 되었다. <판례 5>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충분한 안전교육과 사후 안전조치 시행 등이 지도자의 책임을 면하게 했던 반면 <판례 8>에서는 기상 악화나 불안정한 교육환경 등이 고려될 수 있음에도 활동을 부주의로 강행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청소년안전사고는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외 시간(휴식시간, 취침시간, 야간시간 등)에서도 그 책임이 부여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련활동 점호시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 이동 중 발생한 사고, 강당에서 휴식시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 취침시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을 살펴보았을 때, 지도자는 친권자 등을 대신한 대리감독자로서 청소년이 교육 활동에 참여한 순간부터 활동이 끝나고 부모의 품에 돌아갈 때까지 그 의무는 지속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교육참여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지도자와의 인과관계가 분명할 때만 법적 과실책임이 부여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활동 유형별 안전사고에 대한 청소년지도자의 책임 주요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형 청소년활동은 매우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며 해당 활동별로 각기 다른 전문성 및 자격 기준과 안전수칙, 안전배려의무 여부 등이 법적과실의 주요 판단요소로 적용되고 있다. 둘째, 이동형 청소년활동은 이동수단별로 적절한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안전벨트 착용서부터 차량 점검, 위험 행동 수시 관리, 계약 확인, 트랩도어 및 안전점검, 모의 대피 훈련, 구호 장비 및 구조 물품 사용법, 대피로 파악 등 이동수단에 따른 다양한 안전수칙을 숙지 및 공유해야 한다. 셋째, 숙박형 청소년활동은 활동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활동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지속적인 주의의무가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교육 활동과 달리 생활시간, 취침시간

등 모두가 교육활동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그들을 관리·감독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생활수칙과 기준에 따라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안전사고의 세분화된 안전지침 및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안전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판례분석 이외에도 청소년활동은 매우 광범위하며, 적용되는 법 조항, 책임 범위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청소년활동 및 교육목적에 적합한 안전사고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청소년안전사고 역시 법률적 보호 장치가 입법 과정을 통해 제정될 필요가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듯 청소년 현장에서도 ‘청소년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김민, 2014). 학교보다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안전사고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지도자들에게 법적 쟁송에서 구제해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지도자에게 법률적 책임 전가 및 인권침해 소지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관련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듯 청소년 현장에서도 안전사고 처리를 위한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 오늘날 법정 분쟁에 휘말리는 청소년지도자의 경우에는 기관 차원에서 또는 개인 차원에서 큰 부담을 안고 사고처리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청소년지도자를 위축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 그 과정을 도맡아줄 기관이 필요하며 지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보험절차 및 법적 절차를 간소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청소년안전사고에 대한 지도자 및 법률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기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발생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청소년기관, 청소년인증프로그램, 청소년활동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위험을 지닌 안전사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하여 청소년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주체별, 종사자별, 활동유형별 체계적인 분석과 추후 지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송에서의 법률적 지식과 그 판단기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안전교육 연수 및 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6). **한국직업사전**. 서울: 고용노동부.
- 김대환 (2014).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의무. **공법학연구**, 15(3), 3-41.
- 김민 (2014). 청소년안전 확보 및 정책적 대안 모색.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 평가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63-78.
- 김영희 (2006).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준호 (2013). 연구논문(研究論文): 결과의 예견가능성으로서의 과실. **법조**, 62(11), 208-251.
- 문성호, 윤동엽, 박승곤, 정지윤 (2016). 청소년활동 영역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미래 청소년학회지**, 13, 1-23.
- 박재향 (2002). **학교안전사고와 교사의 책임 한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재우 (2017).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소고: 한국과 중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여성가족부 (2015).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안전의식 지표개발 및 안전문화 확산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0). **2019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이기호 (2005).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법원 판례의 경향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설영 (2008). **학교안전사고의 판례 분석을 통한 교원의 법적 책임연구**.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란 (2010). **학교안전사고 판례에 나타난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재석 (2012). **학교안전사고 판례분석: 대법원판례와 교원소청심사결정례를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종수 (2014). **학교생활필수법률**. 서울: 계백북스.
- 장영수 (2012).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보장 범위의 확대와 그 전제조건. **안암법학**, 37, 1-26.
- 전광석 (2015). 憲法學者 金箕範. **법학연구**, 25(1), 251-299.

- 정진희 (2020). **청소년활동론**. 고양: 어가.
- 정영신 (200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윤진 (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양서원.
- 최기영 (2014).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 판단기준**.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충청남도교육청 (2016).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2016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개정안**. 홍성: 충청남도교육청.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10). **학교안전사고 사례집**. 서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20). 2019년 사고 및 보상통계.
- 한국고용정보원 (2015). **한국 직업전망**.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3). **학교 안전교육 실태 분석을 통한 안전교육 개선 방향**. 울산: 안전보건공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6). **청소년수련활동론**.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종합매뉴얼**. 서울: 여성가족부.
- 한승희 (1999). 한·미 학교안전사고 판례연구. *교육법학연구*, 11, 243-266.
- 한정훈 (2007). **학교안전사고의 법적 책임과 분쟁해결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上井長久 (1975). 学校事故に関する裁判の動向と問題点:その損害賠償責任について(学校事故〈特集〉). *ジュリスト*, 598, 35-42.
- 野村好弘 (1973). **學校事故の民事責任**. 東京: 有斐閣.
- 劳凯声 (2004). 中小学学生伤害事故及责任归结问题研究. *北京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2, 13-23.
- Alexander, K., & Alexander, M. D (2011). *American public school law*. Ontario: Nelson Education.
- Florio, A. E. (1962). *Safety Education*. New York: McGraw Hill.
- Haddon Jr, W. (1970). On the escape of tigers: an ecologic not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and the Nations Health*, 60(12), 2229-2234.
- 법제처 <http://www.law.go.kr/>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 케이스노트 <https://www.casenote.kr/>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y of youth workers regarding youth safety accidents through precedent analysis

Kim, Moonsoo* · Ji, Youngseob**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gal criteria required to protect youth workers from the shifting of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and human rights abuse in safety accidents, and to provide appropriate knowledge of safety consciousness. It further sought to carry out analysis of legal or situational precedents in order to devise a scope of liability and standards of judgement for youth workers. Our main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Legal criteria applied to youth workers in the case of safety accidents in youth work is associated with the results of safety accidents, causation between negligence and fault by youth workers, predictability of accidents, consideration of safety obligations, and the obligations of supervisors. In addition, we examined how different relevant laws have been applied depending on the type of youth activities with special duties of care. Thus, this study shows that major standards of judgement in youth workers' legal liability is required in legal disputes in the case of youth safety accidents, supervisory responsibility of employers and organizational leaders, It also reveals how professional teaching ability of safety instructors and recognition of safety training needs to be improved and also reveals the necessity of continuous study regarding legal protection. Relevant organizations clearly need to develop detailed safety manuals suitable for youth activities, expand opportunities to educate, and to protect young workers from the shifting of responsibility for unsafe, unfair work practices and human right abuses as well.

Key Words: youth safety accidents, youth safe, youth workers, precedents analysis, liability, criteria

투고일: 2020. 12. 7, 심사일: 2021. 3. 8, 심사완료일: 2021. 3. 17

* Gyeong-gi Youth Center

** Sungkyunkwan University